금융위원회	보 도 자 료			• 혁신금융 • 포용금융 • 신뢰금융
	보도	배포 후 즉시	배포	2019.5.2.(목)

책 임 자	금융위 공정시장과장 손 영 채(02-2100-2680)	담 당 자	장원석 사무관 (02-2100-2682)
	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 김 진 홍(02-2100-2601)		김민석 사무관 (02-2100-2518)

제 목 : 「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」 개정안 금융위 의결

□ **금융위원회**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**특별사법경찰 운영, 금융위·금감원 공동조사 활성화, 국민 권익보호 조치 강화** 등을 위한 **「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」 개정안**을 **의결**하였음 (5.2일)

Ⅰ 주요 개정 내용

1. 조사부서와 수사부서간 정보 차단장치 마련

□ 불공정거래 조사업무와 특사경 수사업무간 **부당한 정보교류를 차단**하기 위한 **업무 및 조직의 분리, 사무공간 및 전산설비 분리** 등의 조치 의무를 **금융위원장 및 금융감독원장**에게 부과

<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별사법경찰 운영방안 주요내용 >

□ **(조직) 금융감독원 본원 소속 직원 10명 이내로 구성**

○ 기존 임의조사 기능과 특사경 수사 기능이 혼재되지 않도록 **기존 조사부서와 특사경 부서간 엄격한 정보 차단장치 마련**

□ **(직무)**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Fast-Track 사건으로 선정하여 **검찰에 통보한 긴급·중대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을 신속 처리**

□ **(인권침해 방지)** 적법절차 준수를 위해 특사경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시 **검사가 지휘**하고, 대검찰청 등에서 **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별사법경찰 특화 교육프로그램 진행**

□ **(증선위·검찰 협조)** 검찰은 수사 종결 후 **증선위원장에게 수사결과를 통보**하고, 증선위는 과징금 부과, 금융회사 임직원 제재 등 필요성 검토

○ 2년 후 **양 기관**은 **특사경의 성과 및 한계를 점검**하고 **보완방안 검토**

2. 금융위·금감원 공동조사 활성화

□ 중요사건에 대한 **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사**를 위해 강제조사권을 가진 **금융위**(자본시장조사단)와 **금감원간 공동조사 관련 규정을 명확화**

※ '13년 관계기관 합동 「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」에서 중요사건의 금융위·금감원 공동조사 추진이 명시되었으나, 현재까지 실질적인 공동조사 실시사례는 없음

○ **공동조사** 및 **기관간 사건 이첩 대상**은 **조사심리기관협의회 협의**를 거쳐 **증선위원장이 결정**

* 현 조사업무규정은 공동조사를 조사심리기관협의회 협의사항으로만 정하고, 그 외 공동조사 결정권자 등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음

- **금감원장**도 **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의 조사 수단**(현장조사권 등) **활용**이 필요한 경우 **증선위원장**에게 **공동조사 요청 가능**

3. 국민의 권익보호 조치 강화

□ **(대리인 참여 및 열람·복사) 금감원** 조사과정의 **변호사 참여를 허용**하고,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* 후 **조사대상자 본인의 진술서** 등의 **열람·복사를 허용**

* 자본시장조사심의회 개최 약 10일 전, 피조치자에게 조치 예정수준 등을 사전통지

○ 다만, 증거인멸 등으로 **후속조사나 검찰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**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은 **예외사유로 인정***

* 대리인 입회를 제한할 경우 구체적 사유를 문답서 또는 별도 서류에 기재하고, 자본시장조사심의회 및 증권선물위원회 안건 요약자료에 그 사유를 기재

□ **(사전통지 내실화) 가중감경 사유가 있는 경우** 사전통지서에 기재하고, 자본시장조사심의회 심의 결과 **증선위 조치 수준 상향이 예상되는 경우** 그 내용을 **문서** 등을 통해 **피조치자에게 재통지**

□ **(영상녹화 고지)** 조사과정 영상녹화시, **피조사자에게 사전 공지**

II 향후 계획

□ **「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」 개정안 고시 즉시 시행** (5.3일 예정)

○ 다만, 금감원 조사시 **대리인 입회 규정**은 금감원 내부 운영지침 마련, 조사원 교육, 대외 안내 등의 준비시간을 고려하여 **고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**

□ 금융위의 요청(4.16일, 공문시행)에 따른 **특사경 사무실 설치, 내부 규칙안 마련** 등의 **준비가 완료**되고,

○ 금감원장이 **특사경 추천 대상자 명단을 회신**하면 **지체 없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장**에게 **특별사법경찰 지명을 요청***할 계획

* 「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절차

○ 아울러 **남부지검에 파견된 금융위/금감원 직원**에 대한 **특별사법경찰 지명**도 **조속히 추진**할 계획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☞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http://www.fsc.go.kr

금융위원회 대 변 인
prfsc@korea.kr

넓게 듣겠습니다 바르게 알리겠습니다

"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"

참 고 **주요 용어 설명**

■ (특별사법경찰) 일반사법경찰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서

- 전문적 업무 영역에 종사하는 행정공무원 등에게 관련 분야 수사권을 부여함으로써 전문지식을 범죄 수사에 활용하거나,

- 시·공간적인 제약으로 일반사법경찰의 접근이 어려운 경우, 범죄 현장 접근성이 높은 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여 신속히 수사

■ (Fast-Track) 긴급·중대사건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증권선물위원장 결정으로 검찰에 통보하는 제도 ('13~18년 총 91건)

■ (자본시장조사단) 2002년 증권거래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조사공무원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2013년 신설된 조사전담부서로서 현장조사권 및 강제조사권(압수수색)을 보유

■ (조사심리기관협의회) 금융위·금감원·거래소 등 불공정거래 조사·심리기관간 조사정책 및 방향 등을 협의하는 회의체 (위원장: 증선위 상임위원)

■ (자본시장조사심의회) 불공정거래 조사 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하기 전 사전심의하는 회의체 (위원장: 증선위 상임위원)